

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“읍·면·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”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“읍·면·동장의 추천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한다.”라고 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
  - 제1조(목적)는 복지위원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필요한 사항이며
  - 제2조(위원의 정수)와 제3조(위촉)는 복지위원의 정수와 위촉에 대해 설명하는 조항이고
  - 제4조(위원의 임기)부터 제11조(수당 등)까지는 복지위원의 직무, 해촉, 회의, 교육, 증표교부 등 복지위원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한 조항으로서
-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, 고성읍과 면과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여 위원 정수를 읍에는 3명, 그 밖의 면은 2명으로 하였고,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,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읍면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정수가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지요?
- 답 :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읍면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“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당 2명 이상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문 : 복지위원의 추천 및 위촉 대상자 요건 등이 정해져 있으나 위원회가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분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합니다.
- 답 : 복지위원의 선정에 각별히 유념하여 내실있고 원활한 운영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문 : 복지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확보 하였는지요?
- 답 : 차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

## 7. 토 론 : 없음

## 8. 심사결과 :

- 2009. 3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